1. 개정이유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에 맞춰 관련 규격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04. 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개의 표출부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가변등) 도입에 따라 관련 규격을 마련함(안 별표3)

나. 신호기의 신호등이 전구식에서 LED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사 국가 표준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다. 도로교통법 개정(2020. 10. 20 개정, 2021. 4.21 시행)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장에 설치·배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2조의2, 별표15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1월 중 실시 예정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별표 3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1호의 차량 신호등 종류 중 '가변형 가변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밀리미터)	설 치 기 준
차 량 신호등	횡 형 이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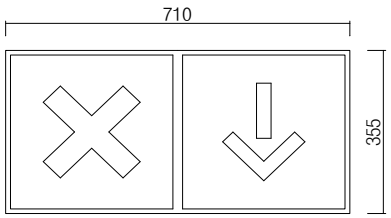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 중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한다.
	가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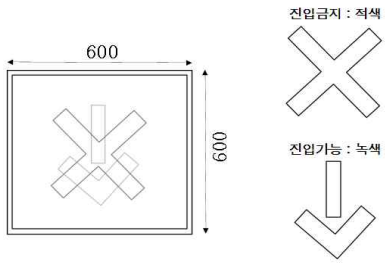	·고속도로등에서 차량정체 시 신호기에 따라 갓길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한다.

별표3 비고 가목의 표 난연성란 중 “UL 94 V-0 등급 이상”을“UL 94 V-2 등급 이상”으로 한다.

별표 1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안전유도장비 배치에 관한 기준(제42조의2 관련)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기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중 공사로 인해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제거하고, 공사장을 회피할 수 있도록 재설치

2. 안전요원 배치 기준

가. 배치 : 최소 1명 이상을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60~90m 전방, 고속도로의 경우 전방 500m 전후 지점 추가 설치)에 배치하되, 도심구간은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 가능

나. 임무 : 수신호와 깃발(야간에는 반사신호봉) 사용하여 통행차량과 사람 통제, 안전유도

다. 복장 :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야광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3. 안전유도 장비 배치 기준

가. 로봇신호수 : 안전요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깃발(야간에는 반사 신호봉)을 상·하로 움직여 신호하도록 해야 함.

나. 작업보호자동차 : 단시간 공사나 이동 공사에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적정 차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점멸 차단판, 경고등, 트럭 장착 완충시설 등을 부착

다. 기타 안전유도 장비 : 경광등, 공사안내판, 임시 방호울타리, 교통콘, 갈매기 표지, 드럼 등을 공사 규모·위치에 따라 설치

4. 기타

가. 교통통제구간은 주의 · 완화 · 완충 · 공사 · 공사이탈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교통통제구간 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적정 여부를 관리하고,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대책 등을 마련

다. 본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운영과	
연 락 처	(02) 3150 - 0611